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05-01

이 과제는 2011년 법제처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

2011. 10.

연구기관 : 정부법무공단

법 제 처

제 출 문

법제처 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법제처 수탁연구과제『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0.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서규영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변호사)

□ 공동연구원

류태경(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배진재(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김재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박지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재형(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문지수(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연구보조원

정치문(정부법무공단, 대리)
박내칠(정부법무공단, 대리)

목 차

요약문 ····· 1
요약서 ····· 2

Ⅰ. 서론 ····· 15

1. 연구의 배경 ····· 17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가. 감면의 인적 범위로서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 24
나. 연구의 방법 ····· 28

Ⅱ.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의 검토 … 31

1. 개관 ····· 33

2. 등록장애인 ····· 34
가. 서설 ····· 34
나. 방송요금 ····· 35
다. 통신요금 ····· 36
(1) 전화요금 ····· 38
(2) 이동통신요금 ····· 38
(가) 근거 규정 ····· 38
(나) 감면의 인적 대상 ····· 38
(다) 감면 내용 ····· 39
(3) 인터넷요금 ····· 39
(가) 근거 규정 ····· 39

(나) 감면의 인적 대상 ····· 40
(다) 감면 내용 ····· 40
라. 교통비 ····· 40
(1) 철도요금 ····· 40
(2) 지하철·전철요금 ····· 41
(3) 공영버스요금 ····· 41
(4) 항공요금 ····· 41
(5)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42
(6)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42
(가) 고속도로 통행료 ····· 42
(나) 공영주차장요금 ····· 43
(다)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등 ····· 44
(라)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 45
(7) 기타 ····· 45
마. 각종 공공요금 ····· 46
(1) 도시가스요금 ····· 46
(2) 전기요금 ····· 46
(3) 상수도요금 ····· 47
(4) 하수도 사용료 ····· 50
바. 문화활동비 ····· 51
(1)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공원요금 ····· 51
(2)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 52
사. 과태료 ····· 52
아. 국민건강보험료 ····· 52
자. 기타 ····· 54

3. 노인(65세 이상자) ····· 54
가. 서설 ····· 54
나. 통신요금 ····· 56
(1) 전화요금 ····· 56
(2) 이동통신요금 ····· 57
(3) 인터넷요금 ····· 58

다. 교통비 ····· 58
(1) 철도요금 ····· 58
(2) 지하철·전철요금 ····· 58
(3) 항공요금 ····· 59
라. 각종 공공요금 ····· 59
(1) 도시가스요금 ····· 59
(2) 상수도요금 ····· 60
마. 문화활동비 ····· 61
(1)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요금 ····· 61
(2) 국·공립 국악원, 공연장 입장료 ····· 61
바. 국민건강보험료 ····· 6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62
가. 서설 ····· 62
나. 방송요금 ····· 63
다. 통신요금 ····· 63
(1) 전화요금 ····· 63
(2) 이동통신요금 ····· 65
(3) 인터넷요금 ····· 66
라. 각종 공공요금 ····· 67
(1) 도시가스요금 ····· 67
(2) 전기요금 ····· 67
(3) 상수도 요금 ····· 68
(4) 하수도 사용료 ····· 69
마. 문화활동비 ····· 70
바. 과태료 ····· 71
사. 국민건강보험료 ····· 71
아. 기타 ····· 72
(1)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 72
(2)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 73
(3)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 73

5. 한부모가족 ····· 74
가. 서설 ····· 74
나. 통신요금 ····· 75
다. 각종 공공요금 ····· 76
(1) 도시가스요금 ····· 76
(2) 전기요금 ····· 76
라. 과태료 ····· 77
마. 기타 ····· 77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 77
(2)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 78
6. 보론-다문화가정의 경우 ····· 78
7. 현행법의 분석 및 정리 ····· 80
가. 현행 감면규정의 특징에 대한 분석 ····· 80
나. 현황의 정리 ····· 81
(1) 장애인의 경우 ····· 82
(2) 노인의 경우 ····· 83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84
(4) 한부모가족의 경우 ····· 84

Ⅲ. 외국 사례의 검토 ····· 85

1. 일본 ····· 87
가. 주요 특징 ····· 87
나. 건강보험료 등 ····· 88
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 93

2. 독일 ····· 94
가. 주요 특징 및 관련 사례 ····· 94
나. 「생계비 보조 고시」의 내용 ····· 98
다. 유형별 검토 ····· 99
(1) 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 99
(2) 교통비 ····· 101

(3) 의료비 ····· 101
(4) 방송통신요금 ····· 103

3. 프랑스 ····· 103
가. 교통비 ····· 103
나. 의료비 ····· 104
다. 방송통신요금 ····· 105

4. 미국 ····· 107
가. 주요 특징 ····· 107
나. 유형별 검토 ····· 108
(1) 교통비 ····· 108
(2) 의료비 ····· 109
(3) 통신요금 ····· 110
(4) 문화활동비 ····· 116

5. 영국 ····· 117
가. 교통비 ····· 117
나. 의료비 ····· 118
다. 통신요금 ····· 118
라. 문화활동비 ····· 119

6. 시사점 ····· 120

Ⅳ. 법령의 정비방안 ····· 123

1.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의의 ····· 125
가.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 125
(1)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 125
(2)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정당성 ····· 128
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 법령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 132
(1) 법령의 정비 방향 - 통합법 제정의 필요 여부 ····· 132

(2)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 134
(가) 법령체계 및 규정형태상 가이드라인 ····· 134
(나)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 135
(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 138
(라) 기타 고려할 사항 ····· 139

2. 개정을 요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 140
가. 등록장애인 ····· 140
(1) 교통비용 관련 ····· 140
(2) 노인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 ····· 141
나. 노인 ····· 142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43
라. 한부모가족 ····· 146
마.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 여부 ····· 148
바. 기타 법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 151
(1) 항공요금의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논의 ····· 151
(2) 과태료의 감경에 대한 의문 ····· 153

Ⅴ. 결론 ····· 155

참고문헌 ····· 160

요약문

◇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첫째, 논의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한 후 각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을 리서치하였고, 나아가 각 취약계층별로 현행 법령 규정의 특징을 검토, 정리하였다.

◇ 둘째,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국 취약계층 관련 법제의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 셋째, 국내외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정 정비의 방향 및 범위, 관련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등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 중 개정을 요하는 법령을 검토하여 신구조문대비표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요약서

□ 서론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방향은 단순히 의식주 지원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보편적 서비스 지원정책의 수립 및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방법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소극적으로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국민으로서의 부담에 대한 감면의 방법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방법이 조세감면이나 급여의 지원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인적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속하려면 ① 해당 취약계층의 특정이 용이하고, ② 그러한 일반적인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이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으로는 우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들 수 있음
- 더불어 가족 및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역시 취약계층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법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통일적 법제와 각 취약계층별 법제 중 효율적인 방향 모색 및 설정 작업을 수행함.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관련 법령 및 문헌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검토가 병행됨

□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의 검토

◇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연구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서비스 운영 현실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위법령인 조례, 고시 등을 살펴보도록 하며, 나아가 약관 등을 검토함

◇ 등록장애인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는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TV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함
-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규정함.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교통비: 철도요금, 지하철·전철요금, 공영버스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음.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교통비의 감면에 대해서는 약관으로 규정하거나 법령상 근거를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함
-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침으로,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활동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제되며,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보험료경감고시」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함

◇ 65세 이상 노인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통신요금: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감면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전화요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화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인 사람 중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을 요함
- 교통비: 철도요금, 지하철·전철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침으로,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문화활동비: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공립 국악원, 공연장의 입장료가 할인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는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보험료경감고시」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소지한 TV수상기(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함
- 통신요금: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감면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전화요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각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하여 감면이 인정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음

-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문화활동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10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는 수급자의 관람료를 면제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특별히 수급자에 대한 경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둔 경우가 있음.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통안전공단은 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함.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는바(제4조 참조), 동법 제5조, 제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법률상 보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사목에서 한

부모가족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에서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을 규정함

- 공공요금: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이 포함됨. 전기요금의 경우 약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가 포함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됨. 교통안전공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역시 그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전체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아 통일된 규율을 함이 어려우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에의 문화 적응 및 구직 등이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이지도 않음

◇ 현행 법령들의 대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나타나는 규범적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감면의 규범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과 같이 비법률 규범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셋째, 국가와의 관련성이 크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물적 대상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그 감면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규범에 감면의 근거를 두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점, 넷째, 물적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어 지역적,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 사례의 검토

◇ 일본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규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기타 방송, 통신, 교통, 문화향유 등의 비용에 대한 감면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을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개호보험법」 등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면의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에 맡기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기본법」 제24조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감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독일

-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사회법전」(Sozialgesetzbuch-SGB)」이라는 단일한 형태의 방대한 법전으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는바, 각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지급되는 보조비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간으로서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항목별로 적극적으로 일정액수를 책정하여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므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교통비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Sozialticket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의료비에 있어서의 본인 일부부담금 및 방송통신요금 등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감면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짐

◇ 프랑스

- 교통요금: 장애인증을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할인을 받으며, 장애인증에 특별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 무료의 혜택을 받음, 항공요금에 있어서도 Air France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존재함

- 의료비: 프랑스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된 보편적 질병급여제도(CMU)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의 특성상 연방법과 주법이 구분되어 있는바,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보면 연방법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실시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주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함
- 교통요금: 1970년 개정된 「도시대중교통법」에서 장애인·고령자가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1991년 「육상교통효율화법」이 제정되면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에서는 주법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의료비: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제도인 Medicare, Medicaid에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존재함
- 통신요금: 미국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이용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으로 §254(c)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는바, 구체적인 제도로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 등이 있으며 그 근거규정은 FCC의 명령에 존재하는데, Lifeline Support에 대해서는 47 CFR 54.401 내지 54.410에서, Link-up America에 대해서는 47 CFR 54.411 내지 54.416에 각 규정되어 있음
- 문화활동비: 미국의 저소득층 관련 문화정책은 접근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바, 무료관람 기회의 확대나 티켓비용의 할인 또는 참여비용의 보조 등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영국

- 교통요금: 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음. 철도의 경우에는 영국 국영철도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Senior Rail Card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를 소지한 자는 국내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에도 철도요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50%까지 할인을 받음
- 의료비: 영국은 1948년 이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운영하

면서 전국민에게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무차별로 제공하고 있어 외래진료 및 입원에 있어서 본인 일부부담이 없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 논의될 여지가 없음. 다만 약제 및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본인의 일부부담이 정해져 있는바, 연령, 소득, 사회적 범주, 질병 등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함

- 통신요금: Light User Scheme(LUS) 제도는 전화사용량이 적은 하위층 20%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용량을 근거로 하는 보조제도이므로 가계 형편에 있어 보조의 필요성이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위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문화활동비: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는 Birmingham의 "Pass to Leisure Card" 제도를 들 수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 British Museum 등 19개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경우에 사회-경제적 계급지표 중 하위층에 해당하는 성인에 대하여 무료입장제도를 운영함. 노인의 경우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

◇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문화활동비 등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제도 운영의 기초가 우리와 큰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큰 시사점을 주는 사항을 찾기는 쉽지 않음. 다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든지 중요한 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점임

□ 법령의 정비방안

1.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의의

가.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 조세 감면이나 적극적인 급여지원이 아닌,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조세 감면이나 급여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은 '현금'을 더 보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지원을 받은 자의 판단 하에 놓이게 되어 정말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악이 되는 방향으로 현금을 사용하여 정말로 긴요한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및 정보격차 확대를 방치하게 될 수 있는바,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방식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히려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등에 두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별대우를 합리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공공서비스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임

◇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바, 사적 자치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당해 서비스가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독과점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특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보편적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감면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 법령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규정을 하나의 법령에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취약계층별, 서비스별로 감면의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여부, 감면의 정도에 있어 통일성,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법에 모든 취약계층과 서비스 분야를 포섭하기 어렵고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분야를 전문성 있게 파악하고 있는 정부부처 등에서 사회 현황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제도를 운용함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한바, 우선 법령체계 및 규정형태의 측면에서는 법률에서는 감면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해두고 감면의 인적 대상 혹은 물적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변

화하는 경제 사정이나 증감 변동하는 취약계층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비율 등은 현실적 운영 상황에 따라 규율이 되어야 하기에 시행령에서 규율함이 상당함

◇ 다음으로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관여가 있다는 점에서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하위규범 혹은 약관에서 구체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그것이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서비스라면 자문이나 권고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일종의 방향을 보여주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과 같이 감면규정을 두어 민간사업자에게 감면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함
- 지역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면의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는 조례에 맡김.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법령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행정권고 등이 더욱 상당할 것임
- 서비스의 특성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면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태료는 준법의식의 약화 및 일반 국민과의 통합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등은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 실시라는 사회보험 제도의 기본적 틀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면제'함은 곤란하며, 현행과 같이 '감경' 규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보면, 감면의 대상인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현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그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감면 등의 혜택이 없을 경우 해당 취약계층의 접근가능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함

◇ 더불어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수가 얼마나 되며, 시행으로 인해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개정을 요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는 철도, 도시철도 등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속철도의 경우 법령에서는 별도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KORAIL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새마을호 등에 준해서 이용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표 2에서 열거하는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에 고속철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취약 등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경제적 원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장애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궁박(窮迫)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래에 추가적으로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할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의 종류와 비교해볼 때도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철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에 대한 65세 이상의 일괄적인 지하철요금 면제는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보아 지하철 요금의 면제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한바, 지하철 요금 면제가 민간사업자나 국영기업의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 면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설정하는 방안, 나아가 경제적 능력을 감경·면제의 요건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경우와 달리 교통비용, 문화생활비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는 상태인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은 당위적인 사안은 아니며, 현재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비용의 몇몇 항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만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적인 예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서 현행 수급자에 한정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차상위계층에까지 넓히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타 법령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 항공운수사업 그 자체는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므로, 「항공법」상 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취약계층의 항공여객 운임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구체적인 인적 대상과 감면 정도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일정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음
- 과태료는 형벌 이외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이른바 질서벌인바, 형벌과 유사한 제재수단에 있어서까지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취약계층의 인적 범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규범마다 그때그때 정책적 필요 내지는 여론에 따라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감면 제도가 규정되어 왔고, 둘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적 범위와 감면의 정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적

필수 서비스의 분야들이 존재함

◇ 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에 감면 내용 등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을 기함은 물론, 이러한 사항이 대내외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여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복지 담당 정부부처가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나아가 감면이 필요하거나 형평에 반하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및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련된 시스템이 합리적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적 서비스 이용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이어진다면 기회의 평등 및 복지의 확대로 공생발전을 기초로 한 공정사회로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임

Ⅰ. 서 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존배려(Daseinsvorsorge)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국가행정으로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러한 국가적 과제로서 생존배려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시장개방은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로 언급되지만, 생존배려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사인 내지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게 되므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더 이상 국가적 과제가 아닌 사적 경쟁의 대상이 되며, 서비스의 질과 양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 국가행정으로 유지되던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바,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국가와 사적 공급주체 그리고 국민 간의 3각관계가 형성되며, 어떻게 하면 종전의 국가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동일한 범위와 질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민 간 불평등, 즉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불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해피해자 등(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부를 획득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고,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심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마저 초래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기간이 일천하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 등 풍토적 특수성이라는 역사로 인해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고,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시작도 늦었지만 오랜 기간의 독재 및 군사정권기를 거치면서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머물러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정비된 사회보장제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변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OECD 국제 비교(%)>[1)]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 30개국 평균
8.2	16.5	19.3	21.3	28.7	26.2	27.7	19.8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3.6%('95) → 5.5%('00) → 7.0%('05) → 8.2('07)>의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통신, 문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OECD, Social Expenditure Data('07년 기준) - 2011년 8월 검색. 여기서 사회복지지출은 공공복지지출(public)과 법정민간복지지출(mandatory private)의 합계를 말하며 자발적 민간복지지출(voluntary private)은 제외된다.

게다가 최근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방식을 보면, 주로 취약계층의 의식주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동 및 정보가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의식주 지원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보편적 서비스 지원정책의 수립 및 수립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생활보호법」[2]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살아가던 어느 부부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 상의 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첫째, "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2)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본법이었다.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와 둘째, "생계보호의 수준이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 이외에도 월동대책비로 1인당 1년에 6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수당으로 1인당 월 15,000원이 지급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3,6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이 지급되었다. 생계보호수급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며(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월 기본사용료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 의거 월 2,500원의 텔레비전 수신료가 면제되고, 「한국통신공사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전화 사용료 월 6,000원(기본요금+통화 150회)까지는 면제되는 등 각종 급여와 부담감면이 행하여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과 같이 2인이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1994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당 매월 대도시에서는 190,000원 정도, 중소도시에서는 178,000원 정도, 농어촌에서는 154,000원 정도이다. 이들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못 미치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곧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3)]

3)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참조. 밑줄은 집필자가 강조의 의미로 표시하였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4]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과제이며 절대적 정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헌법적인 심사에 있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과제가 이에 관한 기본법인 「생활보호법」뿐 아니라 다른 여러 법률 및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의 급여 수준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결론에 의하면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권리는 결코 사법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공감이 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고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5] 그러한 이유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법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중요한 시사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방법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소극적으로 각종

4)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참조.
5)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참조.

사용료·수수료 등 국민으로서의 부담에 대한 감면의 방법도 존재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방법이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 등을 통해 이러한 방법의 기능적 효과 및 규범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6)]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0년 대비 인상률 : 5.60%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여기서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보면 현금급여 및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2010. 8. 31).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등은 모두 국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료·수수료 기타 공공요금 등은 모두 현금급여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바,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경우 현금급여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 그 부분만큼 현금급여액의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액수만큼 조세감면이나 각종 급여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으로서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지(즉,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등을 연구할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이 조세감면이나 급여의 지원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측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사용료 등 감면 등에 관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존배려 및 자립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자립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산재한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및 제도 등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등 각국에서 시행되는 감면 정책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등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료 등 감면 방안 등의 보편적 서비스 지원방식의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선행하여 계층의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감면의 인적 범위로서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우선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취약계층을 어느 범위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연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양하지만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유일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서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취약계층의 자립적 노동에 의한 생활유지 또는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본 연구의 목적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법이 상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모두를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논리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료·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누구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정 취약계층에게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두어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것도 한두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라면, ① 해당 취약계층의 특정이 용이하고, ② 그러한 일반적인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집중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부합하는 범주로는 우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면규정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430만 명 이상이다.[7)]

둘째, 2010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517,312명이다.[8)]

셋째,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및 예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9)]

(단위 : 천명, 억원)

연 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급자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73
예산(편성)	15,536	15,181	15,555	16,548	19,716	23,195	26,474	29,417	32,248	31,477

이와 더불어 가족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역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으로서의 특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등에 대한 논의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의 현황이다.[10)]

(2010년 말 기준, 단위: 천가구)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계	17,339	1,594	107

7) 통계청, 인구조사 참조.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2011년 9월 25일 검색).
8)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참조.(2011년 9월 25일 검색).
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w.go.kr/blss/).(2011년 9월 25일 검색).
10) 통계청, 인구조사 참조.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2011년 9월 25일 검색).

둘째, 혼인귀화자, 결혼이민자의 현황이다.[11)]

(2011년 1월 1일 기준)

혼인귀화자(한국국적 취득)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계	남	여	계	남	여
69,804	4,317	65,487	141,654	18,561	123,093

셋째, 외국계 주민 자녀의 현황이다.[12)]

(2011년 1월 1일 기준, 단위: 명)

외국계주민자녀											
소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1,154	76,985	74,169	9,621	4,789	4,832	126,317	64,275	62,042	15,216	7,921	7,295

이외의 경우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감면 대상 여부를 표하도록 함이 오히려 해당 계층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예를 들면, 성매매피해자의 경우에 통신요금, 교통요금 등을 감면하는 논리적 필연성을 찾기 어려우며, 감면을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피해 사실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됨이 상당하지 않다).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통적 의미의 취약계층만 해도 그 수가 800만 명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 속에는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합에

11) 행정안전부, 「2011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자료 참조.
12) 행정안전부, 「2011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자료 참조.

속하는 중층적인 취약계층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취약계층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 범위나 수는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모두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공부문만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으로 한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감면 대상으로 함이 상당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의 문헌적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바,[13][14] 이를 통해 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각 용어의 정의, 각 법률상에 나타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제도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이 정확히 수립될 것이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사용료 등 감면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등 활용

14) 행정안전부에서는 OK주민서비스 또는 OK라이프서비스라는 주민서비스포털(http://www.oklife.go.kr/)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국가의 각종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취약계층 관련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서비스포털 운영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혜적 목적 및 국민들의 정책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면의 객체, 대상자, 감면액 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면 등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는 공공서비스로 주로 논의되거나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가 문제되는 방송요금, 통신요금, 의료비, 문화활동비, 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일적 법제와 각 취약계층별 법제 중 효율적인 방향 모색 및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감면 규정의 규정 형식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감면의 여부와 내용을 ⅰ) 법률에 모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등에 위임할 것인지, ⅱ) 시행령 등에 위임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법령의 분석 이외에 외국의 문헌 및 법령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검토가 병행될 것인바,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방향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 등의 검토

Ⅱ.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 등의 검토

1. 개관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유료도로법」, 「주민등록법」등 매우 다양하고, 위 각 법령이 규정한 제도의 대부분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법자의 선심성 배려 등에 의하여 입안되어, 각 법령의 일관된 흐름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법령이 아닌 그 하위규범(고시, 지침 등)을 통해 규율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약관 등을 통해 규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하의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연구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서비스 운영의 현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위법령인 조례, 고시 등을 살펴보거나 민간사업자의 약관을 검토하도록 한다.

취약계층의 인적 범위는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으로 한정) 등으로 하는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규정의 현황을 살펴본다.

2. 등록장애인

가. 서설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이나 입법은 많은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 특히 교통비용의 감면과 문화활동비 감면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15)]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도 다양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물적 대상별로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는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TV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감

1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까지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면의 근거 및 위임의 근거를,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다.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는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 2010.10.1>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08.10.1, 2010.3.15, 2010.10.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에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10.1>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1) 전화요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04호, 2011. 1. 13.) 제4조 제2항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전화 1대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에 관하여는,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50%를 할인하고, 시외전화요금은 3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할인하며(최고 15,000원까지 할인), 이동전화에 거는 전화 요금은 월 1만 원을 한도로 30% 감면하고, 114 안내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PC통신을 이용할 경우 전화회선 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다.

(2) 이동통신요금

(가) 근거 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 서울이동통신 등)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감면의 인적 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4호 나목이 정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바목이 정한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등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명의자는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여야 하고,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하며, 단체는 복수 회선 가입 시 1개 명의로 통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감면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4호 나목의 경우, ①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며(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고,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③ 무선호출 서비스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3) 인터넷요금

(가) 근거 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등)에 규정되어 있다.

(나) 감면의 인적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 감면 내용

기본정보이용료의 30%를 할인하고(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 감면),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인터넷요금(ISDN 혹은 전용선 요금)의 30~50% 할인하고 있다. 또한 ADSL 회선 사용 시 접속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라. 교통비

교통비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29면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1) 철도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1~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주말을 포함하여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하고, 4~6급 장애인은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경우 요금의 50%를, 새마을호의 경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철도(KTX)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요금할인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코레일에서 새마을호의 경우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지하철·전철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은 지하철, 전철 요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3) 공영버스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은 공영버스요금을 면제받는다(공영버스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제외된다).

(4) 항공요금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감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적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국내선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 국제선은 비수기에 유동적으로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선 요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1~4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30%를 할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50%를 각 할인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제주제어,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이른바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항공사별로 1~4급 장애인의 경우 30~40%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고, 5, 6급 장애인의 경우 10%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5)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4~6급 장애인은 여객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로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6)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다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당해 장애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관하여, 장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② 제1항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 통행료의 100분의 50

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공영주차장요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는 대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상이하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주차요금 감면은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전액을 면제해 주거나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를 할인하고 있다).

(다)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등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라 부과되는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는 통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5.1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로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 제2조 제2호[16],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라)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대에 한하여, 1~3급 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50%를, 4~6급 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30%를 각 할인해 주고 있다.[17]

(7) 기타

공항터미널 주차료의 경우 공항 자체적으로 50%를 감면한다.[18]

---

2. "장애인자동차"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17) http://www.ts2020.kr/check/car/info/check_commission.jsp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2011. 9. 26. 검색)

18)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4020100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2011. 9. 26. 검색)

마.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지식경제부는 2009. 1.경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 수준 및 사용량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19]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는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대상자들은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요금의 81원/㎥(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금액)을 할인받게 된다.

(2)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같은 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3급 장애인은 월 8,000원을 한도로 해당 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

19)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민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상당히 중첩적인 범위를 가진다.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2.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 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 21.6%

(3) 상수도요금

「수도법」 제12조[20]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에 대

20)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②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수도급수 조례」로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2010년 12월 납기까지 적용)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등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9.11.11)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례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4. 조례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장이 정하며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5. 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 제1항 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0.4.29)

가. 20,000원 이하 : 200원 (신설 2010.4.29)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4.29)

8.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1]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까지)의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포시의 경우도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21) 일렬번호 10은 9의 오기로 보인다.

제40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등급까지의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하여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4)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22], 동법 시행령 제36조[23]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수도 점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이용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의 20/1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에 대하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대항하는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는 장애인에 관한 수도 사용료 경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2)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부터 4급까지)으로 등록된 경우

바. 문화활동비

(1)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공원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제된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2)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공립 공연장의 대관공연을 제외한 공연의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함)의 이용 요금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29면, 제30면 참조).

사. 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규율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된다.[2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 제1항 제6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27, 2007.12.31, 2008.3.3, 2008.9.4, 2010.3.19>

4. 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6. 가입자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500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보험료의 20%를,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보험료의 10%를 각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다.[25)]

그리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경감시켜 준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호).

◈ 지원내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생략.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지원기준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자. 기타

장애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면제받는다(「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노인(65세 이상자)

가. 서설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을 논함에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느 정도

2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 참조

의 연령부터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검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라고 하고 있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인 등'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연령 이상의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의 재량범위 내에 포함되며 규범적으로 판단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생각건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중 고령자의 비중이 날로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담을 빠른 속도로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인 노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65세 이상인 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노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이나 입법은 많은 부분 노인복지법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사용료·수수료 감면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기타 법령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 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통신요금

통신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32면 참조).

(1) 전화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화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인 사람 중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을 요한다(①과 ②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인 자들 가운데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까지 굳이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포함한다.

위 ①과 ② 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서울이동통신 등)에 따라, 시내전화 가입비, 설치비, 장치비 등 가입관련 비용이 면제되고, 시내통화요금 및 시외통화요금 중 각 75도수가 면제되며(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통화요금의 총 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114번호안내요금도 전액 면제된다.

(2) 이동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이동통신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바, 이에 대해서는 '4. 수급자'(보고서 57면

참조)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3) 인터넷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제6호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KT, SK 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등)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의 경우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월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다. 교통비

(1) 철도요금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요금의 30%(새마을호는 주중 평일에만 할인), 통근열차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속철도(KTX)의 경우 「노인복지법」 등 법령이 노인에 대한 할인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노인카드 등 선불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외에 노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요금을 할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지하철·전철요금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

의 노인은 지하철, 전철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3) 항공요금

노인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감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적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국내선할인 항공운임 규정」에 의하면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운임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라.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지식경제부는 2009. 1. 1.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발표하였는데, 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따라서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는 찾기 어려우나, 65세 이상의 노인 중 위 도시가스요금 인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71~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0~12%를 할인 혜택을 보게 되어,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 요금 73,000원 정도를 경감하게 된다.

(2) 상수도요금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43면 참조),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여부 및 비율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수도급수조례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26]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 세대주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구당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26)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부터 4급까지)으로 등록된 경우
다.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마. 문화활동비

(1)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요금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을 입장할 경우 입장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국·공립 국악원, 공연장 입장료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국·공립국악원 관람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은 그 공연장이 자체 기획한 공연(대관공연은 제외)은 관람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지만,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인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27, 2007.12.31, 2008.3.3, 2008.9.4, 2010.3.19>

4. 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 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는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제5조 제1항 참조) 둘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셋째, 제5조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7]

27)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서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나.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소지한 TV수상기(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29면, 제30면 참조).

다. 통신요금

통신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32면 참조).

(1) 전화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1.9.8]

각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하여 감면이 인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포함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5호에 따라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서울이동통신 등)에 따라, 시내전화 가입비, 설치비, 장치비 등 가입관련 비용이 면제되고, 시내통화요금 및 시외통화요금 중 각 75도수가 면제되며(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114 번호안내요금도 전액 면제된다. 또한 KT의 경우 내부 약관으로

수급자에 대하여 월 기본요금 중 1,000~1,200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2) 이동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급자의 경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 제5항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서울이동통신 등)에 따라, 가구당 4인(6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을 한도로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서비스 관련 가입비를 면제하고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각 50%씩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 35%씩을 감면해 주고 있다(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함).

참고로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가 정하는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함)의 경우 차상위계층 중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은, 각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마.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①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②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에 관하여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35% 감면하고 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5항,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서울이동통신 등) 제67조 제6항 사목).

(3) 인터넷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각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제6호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등)에 의하면, 수급자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라.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지식경제부는 2009. 1. 1.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발표하였는데, 수급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위 조치로 인하여 수급자는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71~ 81원의 할인받게 되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0~12%를 감면받게 된다.

(2)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 사목, 동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에 의하면, 수급자는 월 8,000원을 한도로,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을 한도로, 각 해당 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2.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

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8,000원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2,000원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 월 전기요금의20% (월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21.6%

(3) 상수도요금

보고서 제28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3호는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조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구경별기본요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여부 및 비율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 중 몇몇 예를 들어 보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구경별 기본요금의 1/2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도「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급자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4) 하수도 사용료

보고서 제31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수도 점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이용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규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별표 4에 의하면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는 수급자에 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감면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 문화활동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급자는 국립박물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도 수급자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바. 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규율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28]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특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경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29]

---

28)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9) 다만, 「보험료 경감 고시」(제2011- 78호, 2011.7.1.)는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생활곤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바(동 고시 제6조, 제6조의1 참조), 수급자가 아니지만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의 경우에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7. 기타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아. 기타

(1)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30]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수급자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가정용 일반규격 폐기물 종량제 처리봉투를 지급받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수급자는 월 3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용 봉투중 가정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
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3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월 30리터 지급

(2)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는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5. 한부모가족

가. 서설

취약계층으로서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제4조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5조,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보호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

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나.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보고서 제32면 참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사목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신요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08.10.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에서는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

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③ 영 제2조 제3항 제8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다.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보고서 제27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전기요금

보고서 제47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사목 (4)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가 포함된다.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2.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8,000원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2,000원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 월 전기요금의20% (월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21.6%

라. 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규율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기타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포함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는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6. 보론 -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적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최근 논의되는 것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한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일방 또는 양 당사자 모두가 외국 출신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 기업 내지 정부부처 고용 등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민자에 대한 포용이 아직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역시 그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전체를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방안을 논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전체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아 통일된 규율을 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로서 저임금에 근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결혼하여 이민을 온 경우에도 배우자가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등이 너무도 다르다.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에의 문화 적응 및 구직 등이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취직 및 능력 발현이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이의 경우에는 한국어 강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맞춤형 도움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공의 문화시설, 특히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 역시 취약계층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령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의 한 유형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논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근본적으로 사용료·수수료의 감면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외국 출신 구성원에 대한 고용, 언어습득 등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현행법의 분석 및 정리

가. 현행 감면규정의 특징에 대한 분석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정립함에 앞서 현행 법령 검토에 따라 도출되는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대한 현행 법령들의 대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나타나는 규범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법률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가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서비스가 생겨나고 이 신규 서비스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해당 취약계층의 보호를 규정한 법률에서 이의 감면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해당 신규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특정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을 새롭게 규정하게 되면서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이 어느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감면 관계를 규율하지 못하고 서로 뒤엉키게 된 것이다.

즉 특정 취약계층에 관한 보호 내지 지원 법률이 감면의 물적 대상이 되는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물적 대상에 관한 법률이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의 인적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감면의 규범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과 같이 비법률 규범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와의 관련성이 크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물적 대상의 경우 대체로 법률에 그 감면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물적 대상이거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물적 대상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약관에 그 감면의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국가와의 관련성이 크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물적 대상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그 감면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규범에 감면의 근거를 두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넷째, 물적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어 지역적,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나. 현황의 정리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에 대한 연구 대상인 취약계층에 있어 나타나는 현황 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등록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감면의 근거
방송요금	○ (면제)	×	○ (면제)	×	**법령**
통신요금	○ (감경)	○ (감경)	○ (감경)	○ (감경)	**법령 / 약관**
교통비용	○ (감면)	○ (감면)	×	×	**법령 / 약관 / 조례**
가스요금	○ (감경)	△ (예외적 감경)	○ (감경)	○ (감경)	**행정규칙**
전기요금	○ (감경)	×	○ (감경)	○ (감경)	**약관**
상수도요금	○ (감경)	○ (감경)	○ (감경)	×	**법령 / 조례**
하수도요금	○ (감경)	×	○ (감경)	×	**법령 / 조례**
문화활동비	○ (감면)	○ (감면)	○ (감면)	×	**법령**
과태료	○ (감경)	×	○ (감경)	○ (감경)	**법령**
건강보험료	○ (감경)	○ (감경)	– (의료급여 지급대상)	×	**법령**
기타	○	×	○ (주민등록 등초본면제 등)	○ (주민등록 등초본면제 등)	**법령 / 조례**

＊ 감면여부 : ○, ×

그 밖에 감면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장애인의 경우

첫째, 통신요금과 교통비용에 있어서는 물적 종류별 그리고 장애등급별로 감면율의 차이가 있다. 감면율의 유형은 30%, 50%, 100%로 크게 구분된다.

둘째,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의 경우 정액할인이 적용된다.

셋째, 문화활동비의 경우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감경하는 경우 50%의 감경율을 보인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동반자 1인의 경우에도 50% 감경을 하고 있다.

넷째, 과태료의 경우 50% 한도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건강보험료 감경의 경우 일정 소득 및 재산 수준 이하의 장애인 중에서 등급별로 1~2등급의 경우 30%, 3~4등급의 경우 20%, 5~6등급의 경우 10%의 감경율을 보이고 있다.

(2) 노인의 경우

첫째, 방송요금과 전기요금의 감면이 없다.

둘째, 통신요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일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하며, 물적 종류에 따라 30%, 50% 정도의 감경율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교통비용의 경우 물적 종류에 따라서 감면율이 상이하며 대략 30%, 50%, 100% 정도의 종류를 보이고 있다.

넷째, 가스요금의 경우 노인 일반에 대한 감면은 없고 등록장애인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감경이 가능하다.

다섯째, 문화활동비의 경우 물적 종류별로 감면율이 상이하며 50%, 100% 정도의 종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공공체육시설요금은 감경대상이나, 「노인복지법」상 공공체육시설요금은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과태료의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건강보험료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감경율을 정하고 있다.

여덟째,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첫째, 방송요금은 면제된다.

둘째, 통신요금은 물적 종류에 따라 감경율이 다르며 30%, 5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교통비용에 대한 감면이 없다.

넷째,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의 경우 정액할인이 적용된다.

다섯째, 과태료의 경우 50%를 한도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4) 한부모가족의 경우

첫째, 방송요금의 감면이 없다.

둘째, 통신요금의 경우 물적 종류별로 감경율이 상이하며 대체로 30%, 5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통비용에 대한 감면이 없다.

넷째, 공공요금의 경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정액할인이 있다.

다섯째, 문화활동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감면이 없다.

여섯째, 과태료의 경우 50%를 한도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외국 사례의 검토

Ⅲ. 외국 사례의 검토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각국이 추구하는 법관념과 사회경제적 풍토에 따라 국가별 특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문화생활에 어울리는 필수적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과 관련하여 그 저변에 어떠한 법적 사고가 가미되어 있는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향후 추가적인 연구나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 내지 실마리로 삼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접근 하에 검토 대상 국가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정하여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

가. 주요 특징

일본의 입법을 살펴보았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규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로는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등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기타 방송, 통신, 교통, 문화향유 등의 비용에 대한 감면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 등 감면의 경우 취약계층을 특정 유형으로 지목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하여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의미가 두드러졌고 특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김으로써 그 지역적 차이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나. 건강보험료 등

일본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을 법률과 시행령, 기타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면의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건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법률은 「건강보험법」(健康保険法, 1922. 4. 22. 법률 제70호, 최종개정 2011. 6. 24. 법률 제73호)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법률 명칭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목적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법」은 "이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출산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출산에 관한 보험급부를 실시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 목적을 밝히고 있고(제1조 참조)[31] 적용범위는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에 한정된다.

그런 이유로 선원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임시로 고용되는 자(일일고용자, 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고용되는 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고

31)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労働者の業務外の事由による疾病、負傷若しくは死亡又は出産及びその被扶養者の疾病、負傷、死亡又は出産に関して保険給付を行い、もって国民の生活の安定と福祉の向上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용되는 자, 계절적 사업에 고용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닌 자, 임시적 사업의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자, 국민건강보험조합의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자,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의 피보험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제2조 참조).

「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의료기관 혹은 보험약국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때 일부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70세를 전후로 하여 그 부담비율을 구분하고 있다.

제74조(일부부담금)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혜택에 대해 제7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부 부담금으로 해당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에 지불한다.

1. 칠십 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이전이면 100분의 30
2. 칠십 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이후이면(다음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3. 칠십 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이후로 있는 경우이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보상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32)]

다만 이러한 일부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제75조의2(일부부담금액의 특례) 보험자는 재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에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32) (一部負担金)
第七十四条　　第六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保険医療機関又は保険薬局から療養の給付を受ける者は、その給付を受ける際、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給付につき第七十六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算定した額に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額を、一部負担金として、当該保険医療機関又は保険薬局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七十歳に達する日の属する月以前である場合　百分の三十
二　七十歳に達する日の属する月の翌月以後である場合（次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百分の二十
三　　七十歳に達する日の属する月の翌月以後である場合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報酬の額が政令で定める額以上であるとき　百分の三十

있다.

1. 일부부담금을 감액한다.

2. 일부부담금의 지불을 면제한다.

3.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에 대한 지불 대신에 일부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징수를 유예한다.[33]

둘째,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険法, 1958. 12. 27. 법률 제192호, 최종개정 2011. 6. 24. 법률 제74호)의 목적은 「건강보험법」과 유사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상이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사망에 관하여 필요한 보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2조 참조).[34] 이때 시·정·촌(市町村) 또는 특별구(特別区)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당해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된다(동법 제5조 참조).[35]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인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 「선원보험법」의 적용대상자인 선원과 그 피부양자,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그 피부양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법」의 적용대상인 교원,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참조).[36]

---

33) (一部負担金の額の特例)
第七十五条の二　保険者は、災害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特別の事情がある被保険者であって、保険医療機関又は保険薬局に第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一部負担金を支払うことが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対し、次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一　一部負担金を減額すること。
二　一部負担金の支払を免除すること。
三　保険医療機関又は保険薬局に対する支払に代えて、一部負担金を直接に徴収することとし、その徴収を猶予すること。

34) (国民健康保険)
第二条　国民健康保険は、被保険者の疾病、負傷、出産又は死亡に関して必要な保険給付を行うものとする。

35) (被保険者)
第五条　市町村又は特別区（以下単に「市町村」という。）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者は、当該市町村が行う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とする。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서는 보험료의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에 맡기고 있다.

제77조(보험료의 감면 등) 보험자는 조례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37]

셋째,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1982. 8. 17. 법률 제80호, 최종개정 2011. 6. 22. 법률 제72호)에서는 제111조에서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38]

36）(適用除外)
第六条　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市町村が行う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としない。
一　健康保険法　(大正十一年法律第七十号）の規定による被保険者。ただし、同法第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日雇特例被保険者を除く。
二　船員保険法　(昭和十四年法律第七十三号）の規定による被保険者
三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　(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二十八号）又は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　(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五十二号）に基づく共済組合の組合員
四　私立学校教職員共済法　(昭和二十八年法律第二百四十五号）の規定による私立学校教職員共済制度の加入者
五　健康保険法　の規定による被扶養者。ただし、同法第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日雇特例被保険者の同法　の規定による被扶養者を除く。
六　船員保険法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　(他の法律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　の規定による被扶養者
七　健康保険法第百二十六条　の規定により日雇特例被保険者手帳の交付を受け、その手帳に健康保険印紙をはり付けるべき余白がなくなるに至るまでの間にある者及び同法　　の規定によるその者の被扶養者。ただし、同法第三条第二項　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て同項　の規定による日雇特例被保険者とならない期間内にある者及び同法第百二十六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当該日雇特例被保険者手帳を返納した者並びに同法　の規定によるその者の被扶養者を除く。
八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昭和五十七年法律第八十号）の規定による被保険者
九　生活保護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四十四号）による保護を受けている世帯（その保護を停止されている世帯を除く。）に属する者
十　国民健康保険組合の被保険者
十一　その他特別の理由がある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37）(保険料の減免等)
第七十七条　保険者は、条例又は規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別の理由がある者に対し、保険料を減免し、又はその徴収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
38）(保険料の減免等)
第百十一条　後期高齢者医療広域連合は、条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別の理由がある者に対し、保険料を減免し、又はその徴収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

넷째,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 1997. 12. 17. 법률 제123호, 최종개정 2011. 6. 22. 법률 제72호)에서는 제142조에서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호보험법」은 “노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로 인한 질병 등으로 개호(介護)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목욕, 용변, 식사 등 돌봄, 기능훈련, 간호 및 요양상의 관리 기타 의료를 요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진 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혜택을 위해 국민의 공동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개호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그 실시 및 보험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39]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 및 특별구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호보험을 운영하여야 한다(제3조 참조).[40]

피보험자는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및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한다.[41]

---

39)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加齢に伴って生ずる心身の変化に起因する疾病等により要介護状態となり、入浴、排せつ、食事等の介護、機能訓練並びに看護及び療養上の管理その他の医療を要する者等について、これらの者が尊厳を保持し、その有する能力に応じ自立した日常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必要な保健医療サービス及び福祉サービスに係る給付を行うため、国民の共同連帯の理念に基づき介護保険制度を設け、その行う保険給付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定め、もって国民の保健医療の向上及び福祉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40) (保険者)
第三条　市町村及び特別区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介護保険を行うものとする。
２　市町村及び特別区は、介護保険に関する収入及び支出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別会計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41) (被保険者)
第九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市町村又は特別区（以下単に「市町村」という。）が行う介護保険の被保険者とする。
一　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六十五歳以上の者（以下「第一号被保険者」という。）

「개호보험법」은 제142조에서 “시·정·촌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42)]

이처럼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인적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고령자, 개호가 필요한 자 등’으로 개괄적인 특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인적 범위 및 감면의 정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짚을 수 있겠다.

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장해자기본법」(障害者基本法, 1970. 5. 21. 법률 제84호, 최종개정 2011. 8. 5. 법률 제90호) 제24조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감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24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꾀하거나 또는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 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3)]

二　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四十歳以上六十五歳未満の医療保険加入者（以下「第二号被保険者」という。）

42）（保険料の減免等）
第百四十二条　市町村は、条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別の理由がある者に対し、保険料を減免し、又はその徴収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

43）（経済的負担の軽減）
第二十四条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障害者及び障害者を扶養する者の経済的負担の軽減を図り、又は障害者の自立の促進を図るため、税制上の措置、公共的施設の利用料等の減免その他必要な施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독일

가. 주요 특징 및 관련 사례

현재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사회법전」(Sozialgesetzbuch-SGB)」이라는 단일한 형태의 방대한 법전으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사회법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법전」 제1권(SGB I): 총칙(Allgemeiner Teil)
「사회법전」 제2권(SGB II):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사회법전」 제3권(SGB III): 고용촉진(Arbeitsförderung)
「사회법전」 제4권(SGB IV): 사회보험에 관한 공통 규정(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5권(SGB V): 법정 질병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6권(SGB VI): 법정 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7권(SGB VII): 법정 재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8권(SGB VIII):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조(Kinder- und Jugendhilfe)
「사회법전」 제9권(SGB IX):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사회법전」 제10권(SGB X): 행정절차와 사회보장정보보호(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사회법전」 제11권(SGB XI): 사회적 부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
「사회법전」 제12권(SGB XII): 사회부조(Sozialhilfe)

독일 「사회법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특징은 노동에 대한 강조 및 노동을 통한 사회방어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44] 취

44) 이는 독일의 경우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혁명이 늦게 촉발되었던 산업적 바탕 위에서

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도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한 소극적 면제를 통한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법전」상에서 구체적인 감면 조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사회법전」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최저생활 및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지원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회법전」 제2권 제20조(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Regelleistung zu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제1항 내지 제3항

제1항: 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무엇보다도 음식물, 피복, 신체위생, 살림집기, 일상생활에서의 수요, 적정한 범위에서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와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이 권의 제5조 제2항 2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12권(사회부조)에 따른 급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45]

제2항: 독신자, 편부모 혹은 그들의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베를린을 포함한 구 서독지역의 경우 월 345유로이고 구 동독지역의 경우 월 331유로이다.[46]

제3항: 생활공동체내의 두 명의 가족구성원이 만 18세가 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생계급여의 90%를 각각 지급한다. 그 밖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소득활동능력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생계급여는 제2항에 의한 생계급여의 80%이다.[47]

노동자 계층의 문제(산업재해, 실업 등)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런 까닭으로 초기 사회보장적 대응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 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Peter Townsend, *Building Decent Societies,* ILO, 2009, 173~176면 참조.

45) 원문: Die Regelleistung zu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umfasst insbesondere Ernährung, Kleidung, Körperpflege, Hausrat, Bedarfe des täglichen Lebens sowie in vertretbarem Umfang auch Beziehungen zur Umwelt und eine Teilnahme am kulturellen Leben. Nicht umfasst sind die in § 5 Abs. 2 Satz 2 dieses Buches genannten Leistungen nach dem zwölften Buch.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Der Anspruch auf Leistungen zu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nach diesem Buch schließt Leistungen nach dem Dritten Kapitel des Zwölften Buches aus. Leistungen nach dem Vierten Kapitel des Zwölften Buches sind gegenüber dem Sozialgeld vorrangig.
이 권에 따른 생계비 보장을 위한 급부청구권은 제12권 제3장에 따른 급부를 제외한다. 제12권의 제4장에 따른 급부들은 사회급여에 대하여 우선한다.

46) 원문: Die monatliche Regelleistung beträgt für Personen, die allein stehend oder allein erziehend sind oder deren Partner minderjährig ist, in den alte Bundes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 (Ost) 345 Euro, in den neuen Bundesländern 331 Euro. 한편 이 규정은 이후 다시 개정되어 구 동·서독 지역의 구분 없이 현재는 월 359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7) 원문: Haben zwei Agehörige der Bedarfsgemeinschaft das 18. Lebensjahr vollendet, beträgt

• 「사회법전」 제2권 제28조 사회급여(Sozialgeld) 제1항 3문 1호

제1항: 소득활동능력이 있지만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와 생활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소득활동능력 없는 가족구성원은 그가 「사회법전」 제12권[48] 제4장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한 사회급여를 지급받는다(1문). 사회급여는 제19조 1문에 의한 급부를 포함한다(2문). 이 경우 보충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된다(3문)[49]:

1. 만 14세까지는 생계급여의 60%가 지급되고 만 15세부터는 법 제20조 제2항 1문에 따른 표준적인 생계급여의 80%를 지급한다.[50]

즉 생계급여 안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물질적인 생활, 일상생활, 문화생활까지 모두 아우르는 액수를 책정하여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된 그 특정된 액수가 과연 합헌적인가의 문제를 두고 위헌소송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VerG 09.02.2010 - 1 BvL 1, 3, 4/09)을 들 수 있다. 본 결정에서는 헤센 주(州)사회법원과 연방사회법원에 제기되었던 세 개의 소송과 관련하여 실업자 및 그 가족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위에서 인용된 「사회법전」 조문에 규정된 법정 급여 수준의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다.[51]

이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ie Regelleistung jeweils 90 vom Hundert der Regelleistung nach Absatz 2. Die Regelleistung für sonstige erwerbsfähige Angehörige der Bedarfsgemeinschaft beträgt 80 vom Hundert der Regelleistung nach Absatz 2.

48) 「사회법전」 제12권에서는 사회부조에 관하여 규정한다.

49) 원문: Nicht erwerbsfähige Angehörige, die mit erwerbsfähigen Hilfebedürftigen in Bedarfsgemeinschaft leben, erhalten Sozialgeld, soweit sie keinen Anspruch auf Leistungen nach dem Vierten Kapitel des Zwölften Buches haben. Das Sozialgeld umfasst die sich aus § 19 Satz 1 ergebenden Leistungen. Hierbei gelten ergänzend folgende Maßgaben:

50) 원문: 1.Die Regelleistung beträgt bis zur Vollendung des 14. Lebensjahres 60 vom Hundert und im 15. Lebensjahr 80 vom Hundert der nach § 20 Absatz 2 Satz 1 maßgebenden Regelleistung;

5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박귀천,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56~157면 참조.

(1)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회국가원칙과 「기본법」 제1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은 모든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의 최저한도의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인 물질적 전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52]

(2)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이와 같은 기본권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으로부터 인정되는 각 개인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절대적 효력을 갖는 청구권과 더불어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장권(Gewährleistungsrecht)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muss eingelöst werden). 이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화와 끊임없는 현실화를 필요로 하는 바 입법자는 급부의 이행을 사회의 발전상태와 현재의 생활조건에 맞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법자에게는 형성의 여지가 있다.

(3) 입법자는 청구권의 범위를 산출해내기 위하여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현실성 있게(realitätsgerecht) 공감할 수 있도록(nachvollziehbar) 신뢰할 수 있는 수치와 근거 있는 예측절차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입법자는 인간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전형적인 수요(typischer Bedarf)를 월 고정금액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피할 수 없고 현재 문제되고 있으며 단지 1회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수요에 대하여 추가적인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전」 제2권에 따른 생계급여가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의 관련 하에서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입법자에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정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새롭게 생계급여를 정하라는 입법의무를 부여하

52) 관련 독일기본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은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 제3조 제1항: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제6조
  제1항: 부부와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 하에 놓인다.
  제2항: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실행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가 감시한다.
- 제20조
  제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
  제3항: 입법은 헌법적 질서, 집행권에 구속되고 판례는 법률과 권리에 구속된다.

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을 통해 모든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 개인적인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생계급여 결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였다.[53)54)]

나. 「생계비 보조 고시」의 내용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1인당 최저생계비 고시」와 유사한 형태의 「생계비 보조 고시」가 존재한다. 이는 「사회법전」 제12권 [사회부조, Sozialhilfe] 제27조, 제28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생계비 보조 고시」는 월별로 세부항목 및 1인당 지급되는 보조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ahrungsmittel und alkoholfreie Getränke 128,46
(식료품 및 무알콜 음료 보조비 : 128유로 46센트)
2 Alkoholische Getränke, Tabak und Drogen 000,00
(알콜 음료, 담배 및 마약 보조비 : 지원금액 없음)
3 Bekleidung und Schuhe 030,40
(의복 및 신발 보조비 : 30유로 40센트)
4 Wohnen, Energie und Instandhaltung 030,24
(주거, 연료 및 관리 보조비 : 30유로 24센트)

---

53) 박귀천, 전게 논문, 175면 참조 인용.
54)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출된 생계급여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작성되어 2010년 7월 연방하원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안은 독신자, 편부모, 그들의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서는 월 364유로를 지급하도록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연령대별로 4단계로 나누어 0-5세까지는 월 213유로, 6-13세까지에 대해서는 월 242유로, 14-17세까지는 월 275유로,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291유로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2010년 10월 동 법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중재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연방상원은 2010년 12월 17일 다시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연방상원은 개정 법안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통해 그들이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였는데 여야의 입장차와 2010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적 압력에 따른 숙고 및 타협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박귀천, 전게 논문, 178면 참조 인용).

5 Innenausstattung, Haushaltsgeräte u. -Gegenstände 027,41

(실내장식, 가재도구 및 물품 보조비 : 27유로 41센트)

6 Gesundheitspflege 015,55

(보건 보조비 : 15유로 55센트)

7 Verkehr 022,78

(교통 보조비 : 22유로 78센트)

8 Nachrichtenübermittlungen 031,96

(소식전달 보조비 : 31유로 96센트)

9 Freizeit, Unterhaltung, Kultur 039,96

(여가, 오락, 문화 보조비 : 39유로96센트)

10 Bildung 001,39

(교육 보조비 : 1유로39센트)

11 Beherbergungs- und Gaststättenleistungen 007,16

(숙박 및 음식점 보조비 : 7유로 16센트)

12 Andere Waren und Dienstleistungen 026,50

(기타 물품 및 서비스 보조비 : 26유로 50센트)

Summe 361,81 (합계 : 361유로 81센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각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지급되는 보조비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으로서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수를 각 책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정 액수를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 유형별 검토

(1) 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법전」 제12권[사회부조, Sozialhilfe] 제35조

[주거와 난방, Unterkunft und Heizung]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임대인 등에게 주거비와 난방비 등을 일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법전」 제12권 제35조[주거와 난방] 55)

제1항 : 주거 급부는 실제 비용 액수만큼 지불된다. 주거 급부는 급부수급자격자

---

55) 원문: § 35 SGB XII Unterkunft und Heizung
(1) Leistungen für die Unterkunft werden in Höhe der tatsächlichen Aufwendungen erbracht. Leistungen für die Unterkunft sind auf Antrag der leistungsberechtigten Person an den Vermieter oder andere Empfangsberechtigte zu zahlen. Sie sollen an den Vermieter oder andere Empfangsberechtigte gezahlt werden, wenn die zweckentsprechende Verwendung durch die leistungsberechtigte Person nicht sichergestellt ist. Das ist insbesondere der Fall, wenn
1.Mietrückstände bestehen, die zu eine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berechtigen,
2.Energiekostenrückstände bestehen, die zu einer Unterbrechung der Energieversorgung berechtigen,
3.konkrete Anhaltspunkte für ein krankheits- oder suchtbedingtes Unvermögen der leistungsberechtigten Person bestehen, die Mittel zweckentsprechend zu verwenden, oder
4.konkret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ss die im Schuldnerverzeichnis eingetragene leistungsberechtigte Person die Mittel nicht zweckentsprechend verwendet.
Werden die Leistungen für die Unterkunft und Heizung an den Vermieter oder andere Empfangsberechtigte gezahlt, hat der Träger der Sozialhilfe die leistungsberechtigte Person darüber schriftlich zu unterrichten.
(2) Übersteigen die Aufwendungen für die Unterkunft den der Besonderheit des Einzelfalles angemessenen Umfang, sind sie insoweit als Bedarf der Personen, deren Einkommen und Vermögen nach § 27 Absatz 2 zu berücksichtigen sind, anzuerkennen. Satz 1 gilt so lange, als es diesen Personen nicht möglich oder nicht zuzumuten ist, durch einen Wohnungswechsel, durch Vermieten oder auf andere Weise die Aufwendungen zu senken, in der Regel jedoch längstens für sechs Monate. Vor Abschluss eines Vertrages über eine neue Unterkunft haben Leistungsberechtigte den dort zuständigen Träger der Sozialhilfe über die nach den Sätzen 1 und 2 maßgeblichen Umstände in Kenntnis zu setzen. Sind die Aufwendungen für die neue Unterkunft unangemessen hoch, ist der Träger der Sozialhilfe nur zur Übernahme angemessener Aufwendungen verpflichtet, es sei denn, er hat den darüber hinausgehenden Aufwendungen vorher zugestimmt. Wohnungsbeschaffungskosten, Mietkautionen und Umzugskosten können bei vorheriger Zustimmung übernommen werden; Mietkautionen sollen als Darlehen erbracht werden. Eine Zustimmung soll erteilt werden, wenn der Umzug durch den Träger der Sozialhilfe veranlasst wird oder aus anderen Gründen notwendig ist und wenn ohne die Zustimmung eine Unterkunft in einem angemessenen Zeitraum nicht gefunden werden kann.
(3) Der Träger der Sozialhilfe kann für seinen Bereich die Leistungen für die Unterkunft durch eine monatliche Pauschale abgelten, wenn auf dem örtlichen Wohnungsmarkt hinreichend angemessener freier Wohnraum verfügbar und in Einzelfällen die Pauschalierung nicht unzumutbar ist. Bei der Bemessung der Pauschale sind die tatsächlichen Gegebenheiten des örtlichen Wohnungsmarkts, der örtliche Mietspiegel sowie die familiären Verhältnisse der Leistungsberechtigten zu berücksichtigen. Absatz 2 Satz 1 gilt entsprechend.
(4) Leistungen für Heizung und zentrale Warmwasserversorgung werden in tatsächlicher Höhe erbracht, soweit sie angemessen sind. Die Leistungen können durch eine monatliche Pauschale abgegolten werden. Bei der Bemessung der Pauschale sind die persönlichen und familiären Verhältnisse, die Größe und Beschaffenheit der Wohnung, die vorhandenen Heizmöglichkeiten und die örtlichen Gegebenheiten zu berücksichtigen.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기타 수령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불된다. 만약 주거 급부가 급부수급자격자에 의하여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부는 임대인 기타 수령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1. 임대차관계를 특별히 종료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할 정도로 차임 미지급이 존재하는 경우

2. 연료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할 정도로 연료비 미납이 존재하는 경우

… 이하 생략.

(2) 교통비

대중교통요금 등을 감면하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Sozialticket라는 제도가 존재한다.[56]

Sozialticket 제도는 사회보장계층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일괄 교통증을 월단위/연단위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주/시 별로 다르고 월별로 15-30 유로이다. 계층을 나누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주들도 있다.

2009년, 2010년 사이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한 주/시들이 상당수 있고, 그런 주/시에서 사용자수가 반 이상씩 줄었다고 한다. Sozialticket를 판매하는 주체는 주/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다만, Sozialticket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의료비

독일은 건강보험 체계의 보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보장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지 않고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게

56) 상세한 내용은 http://www.sozialticket.org/ 참조.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권 안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장한다.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보면, 외래진료비는 일반의/전문의 구분함이 없이 본인 일부부담금이 없다. 약제의 경우 포장 크기에 따라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57]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치과의 경우 기초예방치료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이 없지만 수술치료 등에 있어서는 본인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입원의 경우 1년에 최고 14일까지 1일당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나 개인 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존재한다.

다만 연령, 소득, 사회적 범주, 질병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약제나 치과진료의 경우 18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부담이 면제되고, 입원의 경우 18세 이하 어린이, 실업자, 사회복지급여 수령자나 보조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 본인 일부부담금이 감면된다.[58]

환자의 연간 비용 부담은 연간 가처분 소득 합계의 2%를 한도로 하며, 한도에 이르면 그 해의 잔여기간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가족의 경우 연간 비용 부담은 합계 총소득에서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면제액을 공

57) 참조가격제는 1만7천여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고가약(오리지널약)에 대해 평균가격을 감안해 산정한 그룹별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위궤양 치료제의 기준가격이 500원이라면 참조가격(기준가격의 2배일 경우)은 1000원이 된다. 환자가 700원인 치료제 A를 사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전액 부담하지만 같은 효능인 치료제 B(가격 1200원)를 살 경우 환자가 참조가격을 제외한 200원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오리지널약이나 신약을 사용하려면 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참조가격제는 1989년 독일이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캐나다에서도 채택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2001년 1월 시행을 중단했다. 보험 약제비가 10년간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58)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2006. 12.), 45~54면 참조.

제하여 정하는데, 가족 규모 및 그 구성원이 성인인지 아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급여 수령자, 전쟁 사상자 급여, 연금수급자의 경우에 급여 한도는 가장에 대한 표준급여율의 2%(지병이 없는 경우) 또는 1%(지병이 있는 경우)이다.[59]

(4) 방송통신요금

사회복지급여 수령자, 실업급여 수령자, 생계능력이 감소한 자, 일정 정도 이상의 장애인 등은 분기마다 내는 라디오나 TV 시청료 등을 면제받으며, Deutsche Telekom에 신청하면 전화요금의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다.[60]

3. 프랑스

가. 교통비

철도이용요금의 경우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증(carte d'invalidité)을 소지하여야 한다. 장애인증을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할인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증에 특별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 무료의 혜택을 받는다. 그 밖에 장애인이 역에서 특별한 서비스나 동반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61]

---

59) Kaiser Family Foundation, "Cost Sharing for Health Care: France, Germany and Switzerland", 2009. 1., p5. Id., p13.

60) http://www.working-in-germany.com/exemption-from-radio-and-TV-charges-0249. html

61) http://debats.sncf.com/feedbacks/40823-tarif-handicape; http://www.solidarite.gouv.fr/informations-pratiques,89/fiches-pratiques,91/cartes-specifiques-du-handicap,1899/les-cartes-destinees-aux-personnes,12291.html 등 참조.

장애인증은 영구적인 장애율이 80%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장등급에 있어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자에게 발급된다. 그리고 장애인이 특별수당이나 보조금의 수급인일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교통비는 입원과 관련된 경우, 장기 감염자에 대한 치료나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찰 및 구급차 사용시, 150km 이상의 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두 달을 한 기간으로 해서 4번 이상 이동을 하고 한번 이동시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항공요금의 경우 Air France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 정도가 75-85%인 장애인은 40%, 85% 이상이면 50%의 항공료 할인을 받고, 시각장애인과 그 동반자는 25%의 할인을 받는다.[62)]

나. 의료비

프랑스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된 보편적 질병급여제도(Converture Maladie Universelle, 이하 CMU)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CMU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서 기본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CMU 기본보험(CMU de base)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CMU 보충보험(CMU comp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CMU 기본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프랑스 거주자, 질병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급여기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 프랑스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의료부조 수급자 등이 대상인데, 연간 가구소득이 일정액 이하(2010년의 경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연간 가구소득이 9,020유로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이상인

62) 박옥희, "장애인복지론-수정판", (주)학문사, 2004, 179면 참조.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CMU 보충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사진찰, 병원일당, 안경 및 치과 보철물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63]

프랑스는 진료, 약제, 치과진료, 입원 등 모든 범주에 있어서 본인 일부부담금이 존재한다. 사회적 범주 및 질병 등에 따라 일부부담금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예로 노후연금 또는 질병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010년의 경우 1인 가구 454.53유로 이하, 2인 가구 778.32유로 이하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64]

다. 방송통신요금

전화의 경우 프랑스 텔레콤이 민영화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직접 법령으로 감면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다만 통신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요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예를 들면 프랑스 텔레콤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 보조금 수급 대상자와 편부모 가정 보조금 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유로에 40분의 음성통화와 40건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65]

TV시청료의 경우 80% 이상의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인이나 상이군인, 장애인 보조를 받는 자, 연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된다.[66]

한편 프랑스에서는 TV시청료와는 별도로 '방송수신세'가 있고 일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송수신세 면제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방송수신세 면제제

63) 신현웅 등,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2., 94~96면.
64)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전게 논문, 47, 48면 참조.
65) 박옥희, 전게서, 179면 참조.
66) 박옥희, 전게서, 179면 참조.

도는 내국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2011. 10. 15. 현재 시행 중) 제 1605 bis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방송수신세를 면제한다.

1. 주민세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은 개인

2. 65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ISP(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자산연대세 또는 부유세) 비과세대상자(여기서, 자산연대세란 2011년 1월 1일 현재 순과세대상소득이 130만 유로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명 '부유세'라고도 한다)

(2) 전년도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자

(3) 1인 가구, 동거인 가구 또는 돌보는 사람과 거주하는 자[67]

---

67) Article 1605 bis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Pour l'application du 1° du II de l'article 1605 :

1° Une seule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quel que soit le nombre d'appareils récepteurs de télévision ou dispositifs assimilés dont sont équipés le ou les locaux meublés affectés à l'habitation pour lesquels le redevable et ses enfants rattachés à son foyer fiscal en application du 3 de l'article 6 sont imposés à la taxe d'habitation ;

2° Bénéficient d'un dégrèvement d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les personnes exonérées ou dégrevées de la tax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s 2° et 3° du II de l'article 1408, des I et IV de l'article 1414, de l'article 1414 B lorsqu'elles remplissent les conditions prévues au I de l'article 1414 et de l'article 1649, ainsi que les personnes dont le montant des revenu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1414 A est nul ;

3° Les personnes exonérées de la redevance audiovisuelle au 31 décembre 2004 en application des A et B du IV de l'article 37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04 (n° 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autres que celles visées au 2° du présent article, bénéficient d'un dégrèvement de la redevance audiovisuelle au titre de l'année 2005.

Le bénéfice de ce dégrèvement est maintenu à partir de 2006 s'agissant des redevables visés au B du IV de l'article 37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04 (n° 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et pour les seules années 2006 et 2007 s'agissant des redevables visés au A du même IV, lorsque :

a. La condition de non-imposition à l'impôt sur le revenu est satisfaite pour les revenus perçus au titre de l'année précéd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a redevance ou la contribution est due ;

b. La condition d'occupation de l'habitation prévue par l'article 1390 est remplie ;

c. Le redevable n'est pas passible de 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au titre de l'année précéd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a redevance ou la contribution est due ;

Pour les années 2008 , 2009, 2010 et 2011, les redevables âgés de plus de soixante-cinq ans au 1er janvier 2004 visés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bénéficient d'un dégrèvement de la redevance audiovisuelle lorsqu'ils remplissent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 b et c ;

3° bis Les contribuables bénéficiaires en 2009 du revenu minimum d'insertion, lorsqu'ils occupent leur habitation princip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390, bénéficient d'un dégrèvement de la redevance audiovisuelle au titre de l'année 2009.

Le bénéfice de ce dégrèvement est maintenu à partir de 2010 et jusqu'en 2011 lorsque :

a) D'une part, le montant des revenu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1414 A, perçus au titre de l'année précéd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n'excède pas celui de l'abattement mentionné au I du même article ;

b) D'autre part, le redevable est bénéficiaire de la prest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262-1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4. 미국

가. 주요 특징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상 연방법과 주법이 구분되어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의 체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Le bénéfice de ce dégrèvement est définitivement perdu à compter de l'année au cours de laquelle l'une au moins des conditions prévues aux a et b n'est plus remplie ;

4° a. Les personnes qui ne détiennent aucun appareil récepteur de télévision ou dispositif assimilé permettant la réception de la télévision doivent le mentionner sur la déclaration des revenus souscrite l'année au cours de laquell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b. Lorsque les personnes physiques imposables à la taxe d'habitation au titre d'un local meublé affecté à l'habitation ne souscrivent pas en leur nom une déclaration des revenus, elles sont redevables d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sauf si elles indiquent à l'administration fiscale que ce local n'est pas équipé d'un appareil récepteur de télévision ou d'un dispositif assimilé ;

5°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par la ou les personnes au nom desquelles la taxe d'habitation est établie.

L'avis d'imposition d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émis avec celui de la taxe d'habitation afférent à l'habitation principale du redevable ou, à défaut d'avis d'imposition pour une habitation principale, avec celui afférent à l'habitation autre que principale. Toutefois :

a. Lorsque la ou les personnes au nom desquelles la taxe d'habitation est établie cohabitent avec des personnes qui ne font pas partie de leur foyer fiscal,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pour le ou les appareils récepteurs de télévision ou dispositifs assimilés détenus dans l'habitation, par les personnes redevables de la taxe d'habitation ;

b. Lorsque la taxe d'habitation est établie au nom de plusieurs personnes appartenant à des foyers fiscaux différents,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pour le ou les appareils récepteurs de télévision ou dispositifs assimilés détenus, par l'une ou l'autre de ces personnes ;

c. Lorsque l'appareil récepteur de télévision ou dispositif assimilé est détenu dans un local meublé affecté à l'habitation, occupé à titre d'habitation autre que principale et imposé à la taxe d'habitation au nom de plusieurs personnes qui appartiennent à des foyers fiscaux différents et qui ne détiennent pas d'appareil dans leur habitation principale, ces personnes doivent désigner celle d'entre elles qui sera redevable d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A défaut,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par les personnes dont le nom est porté sur l'avis d'imposition de taxe d'habitation afférent à ce local ;

6° a. Lorsqu'une redevance audiovisuelle était due en 2004, elle est acquittée, sous réserve de l'article 1681 ter B, annuellement et d'avance, en une seule fois et pour une période de douze mois. Cette période est décomptée à partir de la date anniversaire du premier jour de la période au titre de laquelle elle était due en 2004 ;

b.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n'est pas due lorsque, à la date du début de la période de douze mois mentionnée au a, le redevable est décédé, n'est plus imposable à la taxe d'habitation pour un local meublé affecté à l'habitation par suite d'un déménagement à l'étranger ou ne détient plus un appareil récepteur de télévision ou un dispositif assimilé.

Une seule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est due lorsque des redevables personnellement imposés à la taxe d'habitation pour leur habitation principale occupent, à la date du début de la période de douze mois mentionnée au a, la même résidence principale ;

7° Le contrôle, le recouvrement, le contentieux, les garanties, sûretés et privilèges sont régis comme en matière de taxe d'habitation.

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실시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주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법에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형식이 아닌, 취약계층에게 특정 목적의 금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법령을 정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California 주의 경우 감면 규정은 거의 없고 대체로 금원의 지원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법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의료비에 관하여는 Federal Social Security Act, 42 U.S.C. Sec. 1396 이하, 노인 지원에 관하여는 Older Americans Act of 1965, 42 U.S.C. Sec. 3021 이하, 에너지 요금에 관하여는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 of 1981, 42 U.S.C. 8621 이하, 교통에 관하여는 Federal Public Transportation Act of 2005, 49 U.S.C. Sec. 5301 이하 등이 있다.

나. 유형별 검토

(1) 교통비

미국은 1970년 개정된 「도시대중교통법」(Urban Mass Transportation Act)에서 장애인·고령자가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이동성 확보에 관한 사실을 최초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계획, 운행에 있어서 이들을 배려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고령자가 도시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할 것, 둘째, 그들이 도시대중교통수단을 확실하게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셋째, 도시대중교통분야에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첫째 및 둘째의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할 것,

넷째, 장애인·고령자 대책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임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도시대중교통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령자용의 설비(차량 등)에 관해 자본비보조(구입비보조)를 하게 되었다. 또한 1974년의 개정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 피크 타임에는 장애인·고령자의 운임을 반액으로 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도시대중교통법」의 장애인·고령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1991년 「육상교통효율화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이 제정되면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주법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Illinois주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Act는 소득이 법에서 정한 액수 이하거나 재산세 경감 및 Pharmaceutical Assistance Act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0 ILCS 3605/51(b), 3605/52].

(2) 의료비

미국은 국가 단위의 의료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민간보험 위주로 이루어지기에 제도적인 의료비 감면 등에 대해서는 논할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구적인 신장질환이나 루게릭병 등을 앓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Medicar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며 운영은 주에서 담당하는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re 및 Medicaid의 경우에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바, Medicare의 경우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나 영구질환을 앓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는 이상 본인 일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소득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며, Midecaid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이 감면되는데 감면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기타 요양시설 입소자로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된다.[68)]

주 단위로 별도의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 감면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Illinois주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rsons Property Tax Relief and Pharmaceutical Assistance Act는 빈곤층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대한 약제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320 ILCS 25/4(a)], Pharmaceutical Assistance Program에 따른 지원에 있어 수입이 법에서 정한 소득액 이하인지, 65세 이상인지에 더하여 Meicare Part D에 해당하는지, HIV나 AIDS 보균자인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속하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한다[ILCS 25/4(g)].

또한 Prescription Drug Discount Program Act는 연방 빈곤 기준의 300% 이하의 수입인 Illinois주 거주 주민 중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하는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약국에 대하여 주 정부와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한 일정 범위 약제에 대해 카드를 제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0 ILCS 55/20, 30, 35, 40).

(3) 통신요금

미국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이

68)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전게 논문, 47면, 58면; Kaiser Family Foundation, Id., p5.

용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이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법제화는 1934년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이 최초이지만,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으로 §254(c)[69] 등에서 선언적 규정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제도로서 명문화 되었고, "보편적 서비스 개혁 명령(FCC 97-157)"은 보편적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0][71]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중에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제도로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가 있다(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 Docket No, 98-202 2005 참조). 1984년 AT&T 분리를 계기로 기본료 및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자 요금인상에 취약한 저소득가계에 대하여 선별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관리하며, 주간(州間)의 전기통신서비스

---

69)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SEC. 254. UNIVERSAL SERVICE
(c) DEFINITON
(1) IN GENERAL – Universal service is an evolving level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periodically under this section, taking into account advances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Joint Board in recommending, and the Commission in establishing, the definition of the services that are supported by Federal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shall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such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 are essential to education, public health, or public safety;
(B) have, through the operation of market choices by customers, been subscribed to by a substantial majority of residential customers;
(C) are being deployed in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D) are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2) ALTERATIONS AND MODIFICATIONS – The Joint Board may, from time to time, recommend to the Commission modifications in the definition of the services that are supported by Federal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3) SPECIAL SERVICES – In addition to the services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universal service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additional services for such support mechanisms for schools, libraries, and health care provider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h).

70) 백현미 등,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및 향후 이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종합학술대회 vol. 8 no 2 (200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제980-981면; 김창곤, "정보통신서비스정책", 2004, 진한도서, 111면.

71) EU의 경우 통신요금을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요금에 있어 본 서비스에서의 주제를 논하기에 적합한 국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신요금 부담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선택적 요금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일 것으로 보인다.

및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하고, 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이나 PSC(Public Service Commission) 또는 지역전화회사(LEC)에서 운영한다.[72)]

현재 Lifeline 및 Link-up America 요금제도는 위「통신법」규정에 근거한 FCC의 명령(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근거하는바, 해당 명령의 코드는 47 CFR Ch. I (10-1-10 Edition)으로, Subpart E - Universal Service Support for Low-Income Consumers (47 CFR 54.400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Lifeline에 대해서는 47 CFR 54.401 내지 54.410에서, Link-up America에 대해서는 47 CFR 54.411 내지 54.416에 규정되어 있는바, 각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47 CFR 54.401 Lifeline defined

(a) As used in this subpart, *Lifeline* means a retail local service offering;

(1) That is available only to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2) For which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pay reduced charg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Lifeline support amount described in § 54.403; and

(3) That includes the services or functionalities enumerated in 54.101 (a)(1) through (a)(9). The carriers shall offer toll limitation to all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at the time such consumers subscribe to Lifeline service. If the consumer elects to receive toll limitation, that service shall become part of that consumer's Lifeline service.

(b) [Reserved]

(c)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ay not collect a service deposit in order to initiate Lifeline service, if the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 voluntarily elects toll limitation service from the carrier, where available. If toll limitation services are

72) 김동주, "시내망경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0면.

unavailable, the carrier may charge a service deposit.

(d) The state commission shall file or require the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to file inf ormation with the Administrator demonstrating that the carrier's Lifeline plan meets t he criteria set forth in this subpart and stating the number of qualifying low-income co nsumers and the amount of state assistance.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not subject to state commission jurisdiction also shall make such a filing with the Administr ator. Lifeline assistance shall be made available to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as so on as the Administrator certifies that the carrier's Lifeline plan satisfies the criteria set out in this subpart.

(e) Consistent with 52.33(a)(1)(i)(C),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ay not charge Lif eline customers a monthly number-portability charge.
[62 FR 32948, June 17, 1997, as amended at 63 FR 2128, Jan. 13, 1998; 64 FR 6 0358, Nov. 5, 1999; 65 FR 47905, Aug. 4, 2000; 69 FR 34600, June 22, 2004]

47 CFR 54.411 - Link Up program defined.

(a)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the term "Link Up" shall describe the following assistance program for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which an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offer as part of its obligation set forth in ?? 54.101(a)(9) and 54.101(b):

(1) A reduction in the carrier's customary charge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for a single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 at a consumer'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The reduction shall be half of the customary charge or $30.00, whichever is less; and

(2) A deferred schedule for payment of the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service, for which the consumer does not pay interest. The interest charges not assessed to the consumer shall be for connection charges of up to $200.00 that are deferred for

a period not to exceed one year.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service include any charges that the carrier customarily assesses to connect subscribers to the network. These charges do not include any permissible security deposit requirements.

(3) For an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a reduction of up to $70,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in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o cover 100 percent of the charges between $60 and $130 assessed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at the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of the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For purposes of th is paragraph,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include any charges that the carrier customarily assesses to connect subscribers to the network, including facilities-base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extension of lines or construction of facilities needed to initiate service. The reduction shall not apply to charges assessed for facilities or equipment that fall on the customer side of demarcation point, as defined in ? 68.3 of this chapter.

(b) A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 may choose one or both of the programs set forth in paragraphs (a)(1) and (a)(2) of this section. An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may participate in paragraphs (a)(1), (a)(2), and (a)(3) of this section.

(c) A carrier's Link Up program shall allow a consumer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Link Up program for a second or subsequent time only for a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with an address different from the residence address at which the Link Up assistance was provided previously.

(d) An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publicize the availability of Link Up support in a manner reasonably designed to reach those likely to qualify for the support.
[62 FR 32948, June 17, 1997, as amended at 65 FR 47906, Aug. 4, 2000]

Lifeline Support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요금할인제도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 가

입자회선비용(SLC; 6.5달러)을 면제하는 제도, ② 주정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월 1.75달러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현재 50개 주 모두 시행), ③ 주 정부 고유의 Lifeline/Link Up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그 주의 적격자들에게 주 정부 차원의 감면 금액 중 50%(월 최대 1.75달러)를 지원하는 제도, ④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디언들에게는 최대 2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시내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최소한 1달러는 납부하도록 한다)가 있다.[73]

Link up America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전화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 최초 가입에 대해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7년부터 시행되었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최초 가입비의 50%를 최대 30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② 연방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해주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달러까지 지불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③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의 경우에 추가로 최대 70달러까지 지원하여 최대 100달러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등이 있다.

Lifeline 및 Link-up America 요금제도는 현실적으로 시내전화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저소득가계로 제한하나 별도의 보조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함께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Minnesota, Vermont), 저소득 노령층으로만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경우(Hawaii, Oregon, Washington D.C.) 등도 있다.[74]

구체적인 수혜조건은 저소득층 지원을 제공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을 제공하는 주의 경우 주별 적격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주위원회는 소득 또는 소득과 직

73) 고창열,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19호(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면
74) 김동주, 전게서, 60면

접적으로 연관된 요인들을 근거로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포함된 주는 인디언에게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주의 경우 ① 가계소득 수준이 Federal Poverty Guidelines 수준의 135% 이하이거나 ② 7가지 연방정부 프로그램[75]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의 경우 이외에 3가지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76]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77]

이외에 Telephone Relay Service로서 이루어지는 TRS Fund 제도가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분당 1.7달러 비율로 보조가 이루어진다.

(4) 문화활동비

미국의 저소득층 관련 문화정책은 접근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바, 무료관람 기회의 확대나 티켓비용의 할인 또는 참여비용의 보조 등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Iowa 주의 I-CARD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서비스보조금과 지역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및 여가시설에의 무료 및 할인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적 빈곤에 관계없이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CARD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빈곤계층의 접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다만, 입장료의 할인이나 감면 이외에

75)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tal Security Income,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The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s, Free Lunch Program,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76)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Tribally-Administere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Head Start meeting the income-qualifying standard.
77) 고창열, 전게 논문, 6면

도 이들의 이동에 관한 교통비용 지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78]

또한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대한 공공영역의 지원 이외에도 민간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의 자발적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영국

가. 교통비

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는다.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 노인에게만 무료혜택을 주는 지역도 있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영국 국영철도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Senior Rail Card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를 소지한 자는 국내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에도 철도요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50%까지 할인을 받는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여 예술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 '예술을 위한 초고속 네트워킹 프로젝트(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라는 무료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79]

78) 김세훈, 전게서, 111면.
79) 김세훈, 전게서, 128~130면.

나. 의료비

영국은 1948년 이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운영하면서 전국민에게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무차별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진료(일반의/전문의 구분 없이 마찬가지이다) 및 입원에 있어서 본인 일부부담이 없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다만 약제 및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본인의 일부부담이 정해져 있는바, 연령, 소득, 사회적 범주, 질병 등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의 경우에 본인 일부부담이 면제된다.[80] 약제 본인부담에 있어서도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면제되며,[81] 또한 치과진료의 경우에 수입 보조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면제되고, 수입이 적으며 8,000파운드 이상(양로원에 있는 경우 16,000파운드 이상)의 저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부조를 받을 수 있다.[82]

다. 통신요금[83]

Light User Scheme(LUS) 제도는 전화사용량이 적은 하위층 20%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각 분기당 전화사용료가 10파운드 미만인 모든 가정 고객들에게 기본료를 50%까지 할인해 주고 무료의 일정 통화량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용량을 근거로 하는 보조제도이므로 가계 형편에 있어 보조의 필요성이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위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8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전게 논문, 45~54면.
81) "Descriptions of Health Care Systems: Denmark,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mmonwealth Fund, 2008. 2., p16.
82) www.focusondisability.org.uk/concessions-1.html
83) 김동주, 전게서, 61면

그 외의 제도로는 In Contact(저액의 기본요금으로 착신과 긴급통화만 발신가능함), Limited outgoing calls service(기본요금이 저액이면서 선불된 금액만큼 통화요금을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발신할 수 있음), Basic Service Fixed Sum Package(낮은 월 고정요금만 선불로 지불하고 발신통화량을 제한하는 제도. 수신은 항상 가능하나 긴급비상전화, 교환원 및 무료번호, 실패복구 서비스 등이 제한됨), Lifeline Service(발신전화금지 서비스를 매우 낮은 요금에 제공하는 것으로 수신은 항상 가능하며 비상긴급전화 및 교환원 서비스를 제공함), Pay As You Go(긴급비상전화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선불로 지불한 금액만큼의 발신통화가 가능함. 단, 추가로 지불하면 발신통화가 지속됨), Chargecard Scheme(발신전화금지 서비스를 위한 약간의 고정료를 제외하고는 기본료가 면제되나 지불 카드번호와 보안을 위한 PIN 번호가 부여되며 어느 전화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등이 있다.[84]

라. 문화활동비

영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바,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는 Birmingham의 "Pass to Leisure Card" 제도를 들 수 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Birmingham 비거주자여도 혜택 적용 가능함)들의 경우에는 1년에 4파운드로 Leisure Card를 구입할 경우에 Birmingham 내 60개의 스포츠 또는 레저시설에 대하여 포인트 점수 적립과 함께 할인가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4) 권오성, “정보화 사회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4호(2004. 12.) 51면.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문화생활 참여율을 보이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가지도록 함은 물론,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함에 중심을 둔다. 대표적인 예로는 British Museum 등 19개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경우에 사회-경제적 계급지표 중 하위층에 해당하는 성인에 대하여 무료입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85]

6. 시사점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문화활동비 등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 제도 운영의 기초가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점(예를 들면,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연방법에 규정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프로그램을 주에서 운영할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구체적 규정은 주법에서 규정하며, 독일은 법령상 감면제도가 없고 급여 지원의 형태인 점이 대표적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큰 시사점을 주는 사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 기존의 무상복지에서 주택원조 및 보육 등은 소득에 따라 사회적인 역무에 대해서 사용료·수수료 등을 받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그 기초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든지 중요한 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85) 김세훈, 전게서, 126, 127, 130면.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점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고,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중시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된 경우에도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등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정책의 제시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법령의 정비방안

Ⅳ. 법령의 정비방안

1.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의의

가.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1)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고도로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국가에 국민에게 요구하는 각종 부담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에 국가가 국민에게 이러한 각종 부담에 대한 감면을 행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배려를 함에 있어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교통, 통신, 문화 등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 정보, 문화 등의 서비스 이용 여부가 개인의 삶의 질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기술혁신, 수요의 다양화, 고도화는 멀티미디어 등의 이용확대를 가져와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용의 범위가 고도의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고도 정보사회가 정보를 가진 사람들(haves 또는 information rich)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haves-not 또는 information poor)로 양분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 제공 서비스를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은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경쟁이 최우선시되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 지상주의와도 거리를 두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발전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어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공생발전의 개념이라든가[86] 정의 관념에 기초를 둔 공정사회[87]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세 감면이나 적극적인 급여지원이 아닌,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관리가 곤란하게 될 수 있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강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감면의 정도가 제공 주체마다 달라질 경우 형평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Ⅱ. 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감면 정도를 정하거나 복수의 공공기관 등이 서비스 제공 주체일 경우 그러한 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세 감면이나 급여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은 '현금'을 더 보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지원을 받은 자의 판단 하에 놓

86)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란 2011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시장만능주의와 복지지상주의 양자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 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찾아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87)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를 말하는바,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이며, 8대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 및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공정·투명한 공직 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다.

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악이 되는 방향(술, 담배, 도박 등)으로 현금을 사용하여 정말로 긴요한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및 정보격차 확대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게까지 복지에 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을지 모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은 공정발전의 이념 내지 공정사회의 이상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할 것이다. 제공 주체마다 감면 정도가 달라 형평에 반하는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정비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에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요금의 감면혜택을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철도,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전화, 이동통신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등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도 늘고 있어 앞으로 서비스 요금의 감면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두고자 하는 법정책의 궁극적 이유를 고찰해본다면 결국은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2)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정당성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경우 모두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이 문제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88]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기준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고, 두 번째 요건에서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는바,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다만,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88) 헌재 1989. 5. 24. 89헌가37 결정 : "평등의 개념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구체적 사회정의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실질적인 평등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자의금지를 기본으로 한다...(중략)...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불평등하게, 불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와,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89]

본 사안의 경우에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감면은 수혜의 평등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수혜의 평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히려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제32조 제5항(연소자 근로의 보호),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우선부여), 제34조(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두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처럼 차별목적을 가지는 입법을 허용하는 헌법규정이 있는 점, 따라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각 필수적 서비스의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충분히 허용되며, 차별대우를 합리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의 감면 자체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감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유선전화 등 현대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는 그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속철도, 항공

89) 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등 참조.

요금 문화활동비(공연장, 극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능원, 공원 등)의 감면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일차적인 생존권 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90]

그러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최소한의 정신적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외시할 수 없다. 특히, 문화분야에 대하여는 그 동안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취약계층에 관한 법률,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은 주로 물질적 생계나 신체적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에 머물고 있어 문화적 차원에서 이들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단계로는 아직까지 고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 계층과 관련된 문화적 지원은 복지사업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욕구의 증가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사회적 양극화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문화적 활동영역에 있어서의 참여기회 축소와 이로 인한 취향, 태도, 가치, 관심 등에 있어서 계층 간 괴리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정신적·문화적으로도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91]

따라서 한편으로는 일차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록 생존에 불가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90) 보는 관점에 따라 필수적,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1) 이에 관한 연구로는 김세훈, 전게논문, 2005를 들 수 있다.

사용료·수수료를 감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은 민영화 바람에 따라 종래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것이라도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지 않은바, 그렇다면 그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민간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달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자이다.[92]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점(헌재 1998. 5. 28. 96헌가4 외 다수), 더욱이 민간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서비스가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독과점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특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93] 공익적 측면에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정을

---

92)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데,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하고…." 헌재 1991. 6. 3. 89헌마204 외 다수.

93)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기공급과 관련한 독점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출자)한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적 성격을 띤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사업을 하는 독과점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익목적의 필수적 서비스의 경우 본래 국가가 행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인바, 다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의 자유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고, 감면을 행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법적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 법령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1) 법령의 정비 방향 - 통합법 제정의 필요 여부

Ⅱ.에서 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 감면 영역, 대상자, 감면액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준이 없거나 감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취약계층별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흩어져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아가 민간기업 등으로 다양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사업자의 약관 등에 산재해 있는 감면규정들에 대한 정비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규정을 하나의 법령에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통합법을 제정할 경우 취약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층의 사용료·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규율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대표성 있는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취약계층별, 서비스별로 감면의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여부, 감면의 정도에 있어 통일성,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규는 법률, 시행령, 각종 고시, 지침, 약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면혜택이 있는 서비스 분야가 매우 다종다양하여 통합법에 모든 취약계층과 서비스 분야를 포섭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 취약계층과 서비스 분야를 포섭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여부, 감면의 조건, 감면의 정도 등이 각 서비스 분야의 수요, 투입비용, 국가재정 지원범위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해당 분야를 전문성 있게 파악하고 있는 정부부처 등에서 사회 현황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제도를 운용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느 한 정부부처(보건복지부가 유력할 것이다)에서 통합법을 담당하여 모든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당 개별 법령의 고유의 정책적 목적 실현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법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령의 틀을 유지하되, 각 취약계층의 형편이라든가 감면 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추후 각 계층 및 분야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94]

94)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제도 운용의 전체적 현황을 보건복지부와 같은 복지 담당 정부부처에서 파악하고 있게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현행 감면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에 상향 입법할 것은 그렇게 하고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다거나 사적 자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하향 입법하거나 조례에 위임 또는 약관으로 해결하도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면 대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 부담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역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감면에 따른 규율 등이 용이하지만,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령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등에 비추어 적절한 법령 형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토대로 몇 가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법령체계 및 규정형태상 가이드라인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감면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해두고 감면의 인적 대상 혹은 물적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변화하는 경제 사정이나 증감 변동하는 취약계층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규율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삶의 여건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 방향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감면여부 자체는 가능한 법률에 규정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법률에 규정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법률에서 감면 여부를 규정한 경우에도, 어디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어떤 사항을 명령에 위임하느냐 하는 문제와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과 총리령 또는 부령 중 어느 것에 어떻게 위임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비율 등은 현실적 운영 상황에 따라 규율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시행령에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은 입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결을 요한다는 점에서 총리나 각부 장관이 발령하는 총리령·부령보다 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 각 부처에 공통되거나 관련 부처가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첫째,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관여가 있다는 점에서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하위규범 혹은 약관에서 구체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이 오로지 독점적인 전기 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통해서만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스요금 감면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이 오로지 지식경

제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감경 지침만으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그것이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서비스라면,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여부나 정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이나 권고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일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어 민간사업자에게 감면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95]

셋째,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지역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면의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는 조례에 맡길 필요가 있겠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 역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수수료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9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고, 사용료·수수료 등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당해 서비스의 수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감면의 대상, 조건, 범위 등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97] 예컨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문화재

95)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6)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업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97) 김세훈,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00~206면 참조.

입장료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일반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문화관련 서비스의 범위나 내용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정보의 혼란을 유발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권한에 속한만큼, 법령으로 통일적 규율을 함은 법체계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는바, 따라서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를 권고하는 방안이 더욱 상당해 보인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소극적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취약계층과 관련한 문화활동 지원이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부분에서의 관련 부처 지원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98]

넷째, 서비스의 특성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면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방송수신의 경우

98) '인센티브'는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자면 '보조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8, 451~454면;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4, 463면 등 참조).

TV수상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료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인적 대상을 초점으로 맞추어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감면의 정도를 하위규범에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기에 그 급부를 면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태료나 건강보험료인데, 과태료의 경우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하는 것은 준법의식의 약화 및 일반 국민과의 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 국민에 대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면제조치를 행하는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행과 같이 감경만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첫째, 감면의 대상인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을 하는 주된 목적은 경제적 부조이기에 이를 요하는 취약계층(즉,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일반적으로 관념되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해당 취약계층이 현대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것(이동, 통신, 주거생활, 식수, 보건 등)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것일수록 경제수준에 구애받음이 없이 해당 서비스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면의 정당화 사유는 더욱 커진다.

셋째,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해당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취약계층의 유형에 속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특히 문화생활 측면)에는 그 감면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을 경우 해당 취약계층의 접근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필수적,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부가적 서비스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비용이 들기에 감면 등 혜택이 없다면 그 서비스에 접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화 관련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비용 감면 등과 같은 감면 혜택이 없다면 취약계층이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면 접근 및 향유의 여지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접근가능성을 높일 입법적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라) 기타 고려할 사항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면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입법목적에서 시작할수록 현실적 측면은 간과될 수 있으며 막상 이에 따른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개정을 요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가. 등록장애인

(1) 교통비용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는 철도, 도시철도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무궁화호, 통근열차, 새마을호를 포함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자체 및 한국철도공사(KORAIL)가 운영하는 전철 및 지하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고속철도의 경우 법령에서는 별도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KORAIL에서 새마을호 등에 준해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에 고속철도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단, 할인율 및 대상은 KORAIL과 협의를 요한다).

현행		개정 후(예시)	
1. 철도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신 설>		다. 고속철도(KTX)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 노인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을 대체로 고려하여 물적 대상별로 감면의 여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일률적 감면이 노인에 비해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듯하다. 노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라면 필연적인 운명이므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감면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함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고 그러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취약 등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이 경제적 원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장애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궁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경우에도 감면 여부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경우, 감면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큰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 상황을 하나의 고려요소로 함이 상당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일률적인 감면 규정을 폐지·축소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장래에 추가적으로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나.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별표는 “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거리가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의 종류와 비교해볼 때도 통일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 후(예시)	
1. 철도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인 KTX의 경우 이용요금할인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고 반드시 KTX가 아니더라도 전철과 일반 열차를 통한 이동권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전철과 일반 열차에 대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KTX에 대해서까지 노인에 대한 요금 감면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 밖에 노인에 대한 65세 이상의 일괄적인 지하철요금 면제가 타당한지 검토를 요한다. 왜냐하면 노인 중에서도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보아 지하철

요금의 면제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일이 자산조사를 거쳐서 면제대상자를 선발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다.

다만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지하철 요금 면제가 민간사업자나 국영기업의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 추후 면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며, 현재 통신, 가스요금 감경 시 수급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능력을 감경·면제의 요건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현재 교통비용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등록장애인이나 노인과 마찬가지로 교통비용의 감면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다른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교통요금에 대한 감면만은 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교통비용의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느 법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해 소극적 면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인 까닭으로 그 법체계 및 내용이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실시, 자활지원, 보장기관,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벌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정한 물적 대상인 교통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삽입되는 것이 법 체계상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점

도 있으며 또한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할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나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이와 같은 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등록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라든가 경로우대증과 같은 공적 증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시로 그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한번 노인이 되면 영원한 노인이고, 한번 장애인이 되면 비장애인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매우 다른 특징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 내지 민간사업자가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권적 지위에서 수혜조치로서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면을 통하지 않고서도 각종 비용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통비용의 경우 개별 당사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러한 증표의 발급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표 발급 과정이나 확인 절차에서 일종의 낙인효과를 우려한 당사자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인격적 모멸감이나 자존감의 상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민간사업자가 대체로 고권적 지위에서 개별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부과가 가능한 물적 대상(방송요금,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만 관련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감면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요금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 우선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에서와 같이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둔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교통요금의 감면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문화생활비에 대한 감면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 역시 법령에 규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노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통비와 문화생활비에 대하여 다음과 통일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행	신설(예시)
<신 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5(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 급여실시의 결정을 한 때에 수급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권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의5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권자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신설 0000.00.00> (예시)

수급권자 배려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26조의8 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7.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8.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10.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생계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고 복지자금 대여, 고용촉진, 기타 가족지원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12조 참조).

이렇게 본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일정 부분 경제력의 취약성을 고려

하여 고유의 정책적 목적을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상태가 건강하지 않는 가족임을 의미하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상의 급여 기타 서비스 지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부모가족이더라도 법상의 지원대상과 아닌 대상이 구분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경제력의 취약성이 반드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범위에 속할 수 있다.[99] 왜냐하면 그 보호범위의 경우 법률상 인적 대상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99) 이와 관련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동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동법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기준 등을 달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이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속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도 속하는 경우 동법상 자활급여의 대상자가 된다.[100]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수료 등 감면의 문제는 한부모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은 당위적인 사안은 아니다. 현재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비용의 몇몇 항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 여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매년 조사된다.[101]

---

100) '차상위계층'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

그렇다면 차상위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말한다(동법 제7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등 참조).

현행 법령상 차상위자의 경우 그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종 필수적 서비스의 감면 관련 법령은 ① 이동전화 서비스 등 전화요금 관련 감면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고서 제47면 참조), ②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호, 보고서 제49면 내지 제50면 참조) 등 이외에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차상위자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자는 수급권자가 전제된 개념으로, 차상위자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는, 차상위자가 수급권자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조금은 나을 수 있다는 점까지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될

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화활동비에 관하여는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제고 필요성 자체는 수급자의 경우나 차상위자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이 수급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등의 관람료 징수에 있어 수급권자와 차상위자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규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입장료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등의 운영상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면 면제 규정을 두는 대신에 감경 또는 감면 규정을 두는 등의 방안 역시 가능할 것이다.

현행	신설(예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바. 기타 법령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1) 항공요금의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논의

항공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령에 특별히 감면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항공사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약관을 통해 장애인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이 민간사업자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여객운임 결정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항공운수사업 그 자체는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102] 장애인 할인 등에 관하여 공정한 경쟁 및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관련 법령인 「항공법」[103]에 운임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항공법」은 제6장에서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내용들(항공운송사업의 요건, 면허기준, 면허결격, 운항개시의무, 운항증명, 사업계획 등)을 규정하면서 제117조에서 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항공여객 운임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면 제117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아래 예시하는 바와 같다.

---

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참조.

103) 「항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 후(예시)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항공노선 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의 운임에 관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의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감면의 구체적인 인적 대상과 감면 정도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항공법 시행령」 제45조는 동법 제117조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의 구체적인 인적 대상에 대해서 시행령 제45조에서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개정 후(예시)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신 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약관으로 여객운임의 감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2) 과태료의 감경에 대한 의문

한부모 가족과 등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상당한지는 의문이다.

과태료는 형벌 이외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이른바 질서벌이기는 하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형벌과는 질적으로 유사하고 다만 제재방법에 있어 과태료라는 금전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형벌과 유사한 제재수단인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까지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실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만약 과태로 부과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한부모 가족이나 등록장애인 모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감경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 후(예시)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미성년자 <삭 제> <삭 제>

Ⅴ. 결　　론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동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인적 범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규범마다 그때그때 정책적 필요 내지는 여론에 따라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감면 제도가 규정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최근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취약계층의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한 정책 목적이 사용료 등 감면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법규범에서 그대로 차용할 수도 없다.

둘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적 범위와 감면의 정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종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규범에서 그때그때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감면 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인적 범위를 중심에 두고 물적 대상들을 검토해나가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물적 대상을 중심에 두고 어떤 인적 집단에 대해 감면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지라는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법규범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입법의 난맥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적 필수 서비스의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되 형평성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영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든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종류와 이에 대한 취약계층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내용들이 광범위한 인적 집단에 걸쳐 법률, 시행령, 각종 고시, 지침, 약관 등 다양한 규범의 형태로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적 범위와 물적 대상의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감면의 인적 대상, 감면의 물적 범위, 감면의 조건, 감면의 정도 등을 모두 포섭하는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탄력적인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요컨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을 높일 우려가 크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산재된 형태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하지 않은바, 그렇다면 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료·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에 감면 내용 등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을 기함은 물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시되게 하여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복지 담당 정부부처가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나아가 감면이 필요하거나 형평에 반하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및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련된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된다면 취약계층의 필수적 서비스 이용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이어지면서 기회의 평등 및 복지의 확대로 공생발전을 기초로 한 공정사회로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경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2005

고창열,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1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권오성, 정보화 사회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4. 1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8

김동주, 시내망경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김세훈,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김창곤, 정보통신서비스정책, 진한도서, 2004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4

박귀천,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옥희, 장애인복지론-수정판, (주)학문사, 2004

백현미 등,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및 향후 이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종

합학술대회 vol. 8 no. 2(200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신현웅 등,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06. 12.

Kaiser Family Foundation, *Cost Sharing for Health Care: France, Germany and Switzerland*, 2009

The Commonwealth Fund, *Description of Health Care Systems: Denmark,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2008